

의안번호	2202376
의 퇴 인	김형동 의원
회 답 일	2024.08.27.
추계번호	24C2359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설립 등)	(제3항)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관련대학은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설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관련대학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 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신설될 의과대학에 대학병원을 설립하지 않고, 의료실습 교육 등을 위탁할 경우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신설될 의과대학 등과 위탁여부 등을 예상하기 어려움
 - 현행법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 제5조¹⁾에 따라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'24년 현재 14개의 국립 의과대학²⁾에 대해 14개의 국립대학병원이 실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

1)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 제5조(설립)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(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. 이하 “의학계”라 한다)가 설치된 국립대학(이하 “관련대학”이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

- 강원대 의과대학(강원대병원), 경북대 의과대학(경북대병원), 경상국립대 의과대학(경상국립대병원), 부산대 의과대학(부산대병원), 전북대 의과대학(전북대병원), 전남대 의과대학(전남대병원), 제주대 의과대학(제주대병원), 충북대 의과대학(충북대병원), 충남대 의과대학(충남대병원), 서울대 의과대학(서울대병원), 국립강릉원주대 치과대학(강릉원주대치과병원), 경북대 치과대학(경북대치과병원), 부산대 치과대학(부산대치과병원), 서울대 치과대학(서울대치과병원)
- 향후 대학병원이 함께 신설되지 않은 의과대학이 설립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의료실습교육 등에 대한 타병원과의 위탁이 시행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신설될 국립의과대학의 수 및 위탁인원 수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2)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포함한 숫자임